

안희중 변리사의 직장인 특허상식

제4편

기업의 슬기로운 특허 활용 전략



1. 슬기로운 특허 활용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23년 국내 출원 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일본의 약 28.9만 건과 비교할 때 국내 특허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혹시 등록된 특허권을 기업의 입구 장식장에 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활용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권을 취득하면, 그 특허권은 안타깝게도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특허권 취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즉,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취득한 특허권을 기업에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략적인 특허 출원을 위해 특허 전략을 분석하고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대다수의 연구 결과물을 특허로 출원해 특허 장벽을 구축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전략이 무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를 하나 출원하더라도 그 목적과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들여 확보한 특허권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슬기로운 특허 활용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차별화를 통한 기술 마케팅 전략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일수록, 특허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별성을 도출하고 그 차별점을 특허권 활용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록된 특허권이라면 동종 기술 분야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므로, 명확한 차별점이 존재한다. 특히 그 차별점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마케팅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술, 편리성 등 차별점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다. 차별점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특허 활용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에 차별점을 두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례 중 최고는 냉장고라고 생각한다. 얼음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냉장고는 제빙기가 냉장고 도어에 설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 공간적·기능적 활용 측면에서 도어에 설치된 제빙기가 월등하다. 이 부분이 기술적 차이, 즉 특허로 차별화된 부분이며,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된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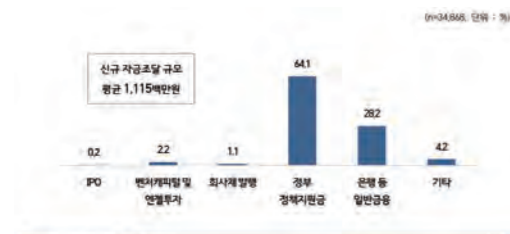


제빙기를 도어에 설치하는 특허권으로 냉장고 분야에서 차별화를 만들었고, 이를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한 사례이다. 현재까지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빙기가 도어에 설치된 냉장고는 오직 LG 냉장고뿐이다. 이 차별점으로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차별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 자금 전략으로 활용

중소기업일수록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2021년에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를 참고하면, 사실상 92.3%의 자금이 대출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신규 자금 조달에서 대출이 유일한 현실적인 자금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을 살펴보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대부분이 은행 등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조차 없는 초기 중소기업이거나, 이미 부동산 담보로 많은 대출을 사용한 중소기업이라면 적절한 자금 조달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그림] 2020년 신규자금 조달 규모 및 방법



자료: 2021년 벤처기업실태조사

<표> 벤처캐피탈 투자 자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정책 금융	모태펀드	25.2	19.1	20.3	18.1	16.8	13.0
	기타정책기관	10.9	9.1	6.2	8.5	5.4	4.5
	성장금융	3.6	6.1	6.7	6.9	7.4	7.8
	소계	39.7	34.3	33.2	33.5	29.6	25.3
	금융기관(신용채외)	16.6	24.6	18.4	20.5	18.3	22.6
민간 출자	연금/공제회	12.6	15.0	7.7	15.8	6.3	10.3
	벤처캐피탈	11.6	9.8	10.4	8.8	11.8	11.0
	일반법인	11.2	9.4	11.9	13.0	17.8	17.6
	개인	7.3	6.0	13.7	6.6	15.2	12.1
	기타단체/외국인	1.0	0.9	4.7	1.8	1.0	1.1
소계	60.3	65.7	66.8	66.5	70.4	74.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벤처캐피탈협회

이때 중소기업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신규 공급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IP) 금융 규모는 총 3조 2,406억 원으로, 이 중 지식재산 담보 대출은 9,119억 원, 지식재산 투자는 1조 3,365억 원, 지식재산 보증은 9,922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총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적지 않은 금액이다. 특허를 자금 조달 전략으로 활용하는 첫 번째 방안은 IP 담보 대출이다. 국내 시중 은행은 모두 IP 담보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비록 그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2023년 발표된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약 9천억 원 규모의 IP 담보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특허를 통해 발생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 가치를 평가할 때 기술성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함께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특허가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기술이 뛰어나 특허 기여율이 100%라 하더라도 매출이 없다면, 특허권의 가치를 제대로 책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방안은 IP 보증이다. IP 보증과 IP 담보

대출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IP 보증 상품 중 대표적인 것이 IP 인수 보증과 IP 가치 평가 보증이다. IP 인수 보증은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특허로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면서, 기술 사업화 자금을 보증해 주는 상품이다. 이는 기술 개발이 어려운 기업에게 효과적이다. IP 가치 평가 보증은 IP 담보 대출과 유사하게 특허 가치를 평가하지만,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다. 대출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증서 발급을 통해 특허의 가치 평가액 내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출 주체와 보증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경영 전략으로 활용

특허권을 비롯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법인 및 법인 대표자는 보유한 특허권의 실시권 계약을 통해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된 상당한 가치를 바탕으로 법인 등에 양도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영 전략에서 특

허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로열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한, 특허권은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과 같은 기업 인증 및 녹색기술과 같은 기술 인증, 그리고 조달청의 성능 인증을 위해 활용된다.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에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허를 마케팅, 자금 조달, 경영 전략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안희중 | 변리사

2007~2010 : 삼성중공업 / 2013~2016 : 팬코리아특허법인 / 2016~2020 : 안진특허사무소 / 2020~ : 정혜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주요분야 : 국제출원, 특허권, 분야별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관련 심판/분쟁/소송 등
 ▷ 회사위치 :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636-3(영천동) 메가비즈타워 C동 405호

